

[생애최초 특별공급] 서류 접수 안내문

■ 당첨자(예비 포함) 자격 검증 서류제출 일정

접수 대상	접수 기간	접수 장소
특별 / 일반 공급 당첨자 (예비입주자 포함)	2026년 5월 4일(월) ~ 6일(수) / 3일간 (10:00 ~ 17:00)	용인 고림 동문 디 이스트 견본주택 (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98번지)

■ 자격확인 제출서류

※ 제출하시는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6.04.10.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※ 아래 서류 외 적격 및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구분	필수	해당자 (추가)	해당서류	발급 기준	자격검증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기본 서류 ※필수/해당 시 추가 서류 구분 必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(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) ※ 모바일 신분증 불가(실물 지참 필수) ※ 2020.12.21.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• 행정복지센터 발급 시 : 청약자 본인 발급용에 한함 (용도 : "아파트 계약용"으로 직접 기재) •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시 : 용도[아파트 계약용] 및 제출처 [용인 고림 동문 디 이스트] 입력하여 출력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접수 및 대리계약 불가
	○		인감도장	본인	• 인감증명서 상 인감도장 일치 여부 확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시 서명으로 대체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본인	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	○		배우자	• 배우자 분리세대로 청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※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본인	※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 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	○		직계 존속	•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1년 이상 부양하여 가구원수 포함 및 소득 산정한 경우 ※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, 주소 전체 포함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등 상세증명서로 전부 공개 발급
		○		배우자	•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등 상세증명서로 전부 공개 발급
		○		직계 비속	• 신생아 우선공급/일반공급으로 신청한 경우 (※ 세대원전원 성명,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, 상세 발급)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※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등 상세증명서로 전부 공개 발급
		○		직계 비속	•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(배우자가 없는 경우)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'미혼인 자녀'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등 상세증명서로 전부 공개 발급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※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-입주자모집공고일로,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) ※ 개명 시 개명전/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모두 제출
		○	복무확인서	본인	• 10년 / 25년 이상 장기복무근로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
		○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제출 :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 ※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(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)
	○	• 임신의 경우(견본주택 비치)			
	○	임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청약신청자가 임양한 자녀를 '미혼인 자녀'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	
	○	입양이행 확인 각서		• 입양의 경우(견본주택 비치)	
○		자격요건확인서	본인	• 견본주택 비치(가구원수, 월평균소득 산정, 자산기준 대상 여부 확인 등)	
○		5개년도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		•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	
	○	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	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	•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(과거이력 포함)으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(분리된 배우자 및 동일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)전원 제출 ※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※ 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, Fax 수신 문서 가능	
우선/일반공급 (신생아 포함)/추첨제 (해당자)	○	소득증빙 서류 (재직증명서 포함)	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	•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(분리된 배우자 및 동일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) 전원 ※ 직인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(Fax 및 복사본 접수 불가)	
	○	비사업자 확인각서	19세 이상 세대원	• 견본주택 비치 (자영업자가 아닌 경우)	
	○	사실증명(신고사실無)		• 2024년 1월 1일부터 소득이 없는 경우 (예 : 계속된 전업주부 또는 무직자)	
추첨제 (해당자)	○	①부동산 소유 현황 및 ②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	본인 및 세대원	•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 기준은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 및 전 세대원(분리된 배우자 및 동일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)의 부동산 소유 현황 제출 ※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본인 및 전 세대원 별 이력/조회결과 보이게 화면캡처하여 출력 ※ 발급기관 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"부동산 소유 현황" (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"공개"에 체크) ※ ②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: 위택스(www.wetax.go.kr)	
	○	③공시가격증명서류		• 본인 및 전 세대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, 해당 부동산 공시가격 증명서류를 모두 제출	
부적격 당첨 통보자	○	무주택 소명서류	해당 주택	•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또는 민원 회신,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 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
	○	당첨사실 소명서류	해당 기관	•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	
제3자 대리인 제출시	○	위임장	청약자	• 견본주택 비치(인감날인) ※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.	
	○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• 행정복지센터 발급 시 : 청약자 본인 발급용에 한함(용도 : "아파트 계약 위임용"으로 직접 기재) •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시 : 용도[아파트 계약 위임용] 및 제출처 [용인 고림 동문 디 이스트] 입력하여 출력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 서류 접수 및 대리 계약 불가	
	○	대리인 신분증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(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) ※ 모바일 신분증 불가(실물 지참 필수) ※ 2020.12.21.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	

■ 소득 증빙 서류

해당자격	대상	서류제출 시 발급 유의사항	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출산휴가,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("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"으로 발급) ※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	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, 세무서 (또는 국세청 홈택스)
	금년도 신규취업자/금년도 전직 근로자	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(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)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거나, 본인의 근로(연봉)계약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.	①, ②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 근로자	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,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(직인 날인)	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, 세무서
	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학원강사, 보육교사 등)	① 재직증명서(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) ②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(원본)	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, 세무서
자영업자	일반과세자/간이과세자/면세사업자	①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②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(원본)	①, ② 세무서 (또는 국세청 홈택스)
	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	①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(공고일 이전 가입)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	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②, ③ 세무서
	법인대표자	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(직인날인) ② 전년도 재무제표(원본) 및 원천징수이행명세서(직인날인) ③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④ 사업자 등록증 ⑤ 법인등기사항증명서(원본)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	①, ②, ③ 해당직장 ④ 세무서 ⑤ 등기소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전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 명세서(직인날인) 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	① 세무서 ②, ③ 해당직장	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※ 공금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 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	① 행정복지센터	
비정규직, 일용 근로소득자	①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(직인 날인)	① 해당직장, 세무서 ② 해당직장	
무직자	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: 전년 소득이 없고,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② 전년도 사실증명(신고사실 없음)을 반드시 제출 :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,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	① 견본주택에 비치 ② 세무서	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해당 서류상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 등 상세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.
※ 상기 소득 입증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,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※ 모든 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,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. (예외 :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,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)